

『구미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안 자 : 구미시장

2. 제안이유

-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사항들을 법령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기 위함.

3. 주요내용

- 소액 지방세 수납관련 조문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던 것을 삭제하고, 시행령에 규정됨에 따라 관련조례 정비(안 제11조)
- 지방세법 개정으로 총 체납액 1억원이상 고액·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제도가 도입됨에 따른 관련조례 신설(안 제13조의2)
- 소득할주민세 수정신고 대상에 납세자 착오에 대하여 수정신고 납부가 가능 하도록하여 납세자 스스로 시정 할 수 있는 기회 부여 (안 제22조제1항)
- 주택분재산세 산출세액이 5만원이하인 경우 2회로 나누어 고지하던 것을 7월 부과 시 전액부과 하도록 개정
(안 제27조의3 제2항 제3호, 제90조 제2항 제3호 단서신설)
- 차량을 공매로 인도 받은 후 자동차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자동차세를 과세하지 못하는 과세형평문제 해소를 위한 조문 정비(안 36조제3항)
- 담배소비세 세율 변경에 따른 조문개정(안55조)

4. 참고사항

- 지방세법 · 지방세법시행령
- 경상북도 재정과-2746(2006. 2. 8) 지방세 조례 정비안

5. 검토의견

-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 고액 · 상습채납자에 대한 명단 공개제도의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세법 관련법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이와관련된 세부사항을 법령과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에 부합되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.
- 주요 개정내용은 총 채납액 1억원이상 고액 · 상습 채납자에 대한 명단공개 절차를 신설하고, 주택분 재산세 산출세액이 5만원이하인 경우 2회 나누어 고지하던 것을 7월 부과시에 전액부과, 소득세할 주민세 납세지 착오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가능토록 규정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법령에 맞게 조문을 개정하는 것임.